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Claim Adjuster
remuneration standards)

김명규* · 이정호**
Myungkyu, Kim Jeongho, Lee

<국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인해 혼란을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저가보수 체계는 보수의 적정성 분쟁과 불공정 계약 등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부실한 손해사정으로 이어짐으로써 적정보험금 산출에 악영향을 입히고 보험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영역별로 표준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 감독규정을 복원 또는 손해사정사회와 보험협회·보험회사가 협의하는 보수기준을 마련하거나 손해사정사회가 보수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기준은 감독기관 보고와 함께 이를 공시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 키워드 :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 보수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제1저자)

** 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I. 머리말

우리나라 손해사정사 제도¹⁾는 보험회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자격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제도화한 보험계약자 등(이하 ‘보험소비자’라 한다)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인 것²⁾이다. 이러한 손해사정사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회사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 자격을 가진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험회사와 보험금청구권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이며,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객관, 신속한 평가사정(조사, 결정)을 하는 것³⁾이다.

현행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크게 구분되는데, 전자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경우를 후자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⁴⁾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을 받는 주 업무대상이 보험회사, 보험소비자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데, 현행 보험업법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함) 등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립손해사정사를 보험회사로부터

1)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서 손해사정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고, 각 업무영역별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을 한다.

①현행제도는 제1종 손해사정사(화재·책임·기술·근로자재해 보상보험 등), 제2종 손해사정사(해상·항공보험 등),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 관련),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 제4종 손해사정사(상해·질병·간병보험)로 구분한다.

②2014년 이후부터는 재물손해사정사(물적피해), 신체손해사정사(사람의 신체), 차량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제도가 바뀐다.

2) 보험업법 제1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보험상품(보충보험계약은 제외)과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토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3) 국회사무처,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법률 제3043호), 1977 12. 31. p.347, p.387.

4) 보험업감독규정 제9-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있다.

위탁받는 경우와 보험소비자로부터 위탁받는 경우로 구분하여 보험회사 위탁 손해사정사는 선임손해사정사로, 보험소비자 위탁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로 명칭을 쓰기로 한다. 즉 손해사정사를 고용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3종류로 구분하기로 한다.⁵⁾

손해사정사는 업무수행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수를 받게 된다. 이러한 보수에 있어서 고용손해사정사의 경우 각 회사별 보수체계에 따라 임금과 자격수당 등을 받고 있으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선임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소비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체결시에 보수를 정한다.

본고에서는 손해사정사와 다른 전문가보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보수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수기준을 두는 것의 실효성여부, 보수기준을 둔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적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보수기준관련 규정

1. 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규정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감독규정 제9-17조(보수)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보험소비자“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함)이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⁶⁾가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그리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금융감독원장을 말함)의 승인

5) 업무수행 형태별 손해사정사의 구분을 바꾸었으면 한다. 즉, 고용손해사정사는 독립성과 자공심 고취 차원에서 회사손해사정사로, 현재의 독립손해사정사는 위탁대상에 따라 선임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분리하여 구분(사실 실무 현장에서 이렇게 구분되고 있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손해사정사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를 말한다.

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 감독규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보험소비자로부터 선임을 받은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현재와 같이 손해사정사회가 정한 기준을 감독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보수기준 체계가 2원화되어 있었다.⁷⁾ 그러나 현재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규정만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 다른 자격의 보수기준 규정

현재 보수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은 법무사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제2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또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협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법무사를 제외한 유사 전문자격의 보수규정이 폐지된 이유는 지난 1999. 2. 5일 공포·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라 함)」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⁸⁾ 당시 카르텔 일괄정리법은 전문직서비스의 보수(수수료)를 해당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각 법률에 근거를 둔 카르텔을 폐지 또는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 등 9개 직

7) 2007. 2. 8일 개정 이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17조(보수) ①독립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의한다

1.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보험회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
2. 보험계약자 등(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그 밖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

②제1항제1호의 보수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보수기준은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이황,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법취지와 향후 정책방향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1999. 5월호, p.50.

종이 여기에 해당되어 있었던 보수기준이 없어지게 되었다⁹⁾. 또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법적 효력은 입법형식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개별 법률에 우선한다는 내용이었다.¹⁰⁾

전문직의 보수기준을 폐지하게 된 배경으로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전에는 전문직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자가 정보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한 요금을 요구받게 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여 사업자단체가 보수를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져 왔으며, 소비자들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전문직서비스도 많은 상품(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며, 경쟁이 도입될 경우 수수료 인하, 소비자의 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수요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종래의 전문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게 작용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문직서비스의 가격을 그 공급자가 집단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리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기준을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별로 서비스 및 보수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는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는 것이었다.¹¹⁾

하지만 당초 정비대상에 포함되었던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사법부가 관장하므로 추후 정비대상으로 남겨지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현재 유일하게 존치하게 된 보수기준이 되었다.

3. 외국의 사례

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및 영연방 국가 외에는 없다고 하겠다.¹²⁾ 따라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손해사정업계의 업무수입 및

9) 이황, 앞의 논문, p.53.

10)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포함된 카르텔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야 폐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형식상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일괄정리법 자체로 개별법이 이미 개정된 것으로 보며, 추후 개별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은 요식적인 문안정리 뿐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법무사의 보수기준이 효력이 있는 지는 의심스럽다.

11) 이황, 앞의 논문, p.53.

보수의 분쟁에 있어 미국의 경우 불합리한 수입료와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손해사정을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관(NAIA : 미국독립손해사정사협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¹³⁾

Ⅲ. 손해사정사 보수의 실태와 문제점

1.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

현재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없다고 본다. 지난 2007. 2. 8일 감독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시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회사가 선임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기준 신고의무를 폐지¹⁴⁾하였다. 따라서 현재 손해사정 위임계약시 그 보수를 보험회사와 선임손해사정사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짐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저가보수 체계를 유지하기위해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손해사정 보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강자의 보험회사가 약자인 선임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부득이 저가의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므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임손해사정사는 저가의 보수로 정해진 인건비 및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1인당 처리 건수의 늘리고, 이로 인한 업무과중은 충실한 손해사정과 거리가 멀게

12) 유사한 제도가 독일에 있고, 일본은 자동차대물 사정사 제도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13) 남상욱, "선진국의 보험전문인 운영사례와 시사점", 월간 금융리포트, 2006. 12, p.21.

14) 당시 감독기관은 금융패널의 건의사항을 따랐다고 하나 당해 금융패널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의하면 2005. 5월 S화재해상보험(주)가 보수개선안(일명 '일괄 위임계약 시행안')을 마련하여 업무용역 서비스별 단계별로 손해사정위임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답변을 손해사정사회에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손해사정사회의 답변은 일괄위탁시 적용보수 내용이 보수기준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사항은 아니나, 일괄위임계약 시행안에 따라 계약체결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 선임손해사정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면 하는 것이었다.

15) 손해사정 위임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되어 결국 피보험자 및 보험사고 관계자의 불만을 낳게 되고, 이러한 보험에 대한 악영향과 폐해는 민원의 증가를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현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독사 09-01, 2009. 12. 10)¹⁶⁾과 ‘보험계약자등이 부담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손보 540-16565, 1993. 12. 23) 이하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이라 함)¹⁷⁾이 있다. 하지만 보수기준 2개 존재함으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동차대인사고를 제외한 다른 업무영역은 보수기준에 따라 보험소비자와 독립손해사정사 쌍방이 위임계약할 때 보수를 정하고 있다.¹⁸⁾ 하지만 항상 과다보수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경우 보험소비자는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이 모든 보수의 기준에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독립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으로 자동차대인사고까지 포함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자신이 유리하게 생각하는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으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의 경우 자동차대인사고의 손해사정 보수로 매우 제한적이며,¹⁹⁾ 다른 자격사의 업무 보수기준에 비해서도 다소 낮은 편이라고 본다.²⁰⁾ 이는 기준이 만들어진지 20여년이 지났고 변화된 사회 제반적 환

16) 이 기준은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를 10% 이내로 정하고 있다.

17) 자동차 대인사고의 손해사정 보수기준을 말하며, 보통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7.7%~6%로 단계화되어 있다.

18) 보통 10% 이내의 보수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약정하는 정액보수로 계약하기도 한다.

19) 손해사정보수표에 의하면 우선 손해사정금액에 따라 다단계화 되고, 요율체제와 누진가산액을 가산하게 되어 일반인으로서의 다소 복잡하고 난해하여 손해사정완료 후 위탁계약자에게 보수 청구시 설명이 쉽지 않은 면도 있다.

20) 법령규정에서의 보수기준은 폐지되었으나 다른 자격사의 경우 협회의 지침, 기준이 마련되어 공시하고 있는데,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협회의 노무사 보수규정지침에 의하면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달리하여 착수금을 난이도/고(과로사, 1급 장애 등)는 200만원, 난이도/중은 100만원, 난이도/저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각 사건별 성공보수로 보상액기준 10~20%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상 변호사의 경우에는 착수금으로 200~300만원, 사건성공보수로 소송물가액의 15%이상으로 계약하기도 한다.

경이 감안되지 않아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이 마치 모든 보수기준의 표준이 되어서 불리할 때 비장의 무기로 사용되는 폐해도 발생한다. 즉,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보다 많은 보수로 정했을 경우 손해사정을 완료하고 보수지급 시점에 일부 보험 소비자가 위탁계약상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금액을 깎을 목적으로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을 고집하기도 한다.²¹⁾

IV.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개선방안

1.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는 선임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워 저가보수 체계를 유지하려고 심혈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 보수체계에서는 실질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부실한 손해사정만을 낳게 되고, 그 결과는 보험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보험제도의 불신을 잉태하여 결국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임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안으로 기존 감독규정을 다시 복원한다,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보수는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하여 정한 보수기준을 감독원에 신고토록 한다.

21) 보통 손해사정업무의 완료시 보수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상 보상금 또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보수청구와 지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건을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고 업무가 진행되어 완료하여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일부 보험소비자의 경우는 보수를 감액하고 싶어진다고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손해사정사회가 보험협회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마련한다. 보험협회가 협의대상으로 어려운 경우 각 보험회사와 협의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의 효율성이 있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정하여 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손해사정사회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수의 최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정한다. 이 기준을 손해사정 위탁계약시 준수토록 권장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사례를 공시토록 한다.

위 세가지의 방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현재와 같이 강자의 보험회사 위주의 손해사정 보수계약의 체결은 다소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나아가 보험소비자의 불만도 줄게 됨으로써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2.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

현재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과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으로 이원화된 보수기준을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으로 통일하여야 한다.²²⁾ 이 기준은 각 업무의 영역과 난이도를 감안하여 쉽게 이해되는 보수표로 구성되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 '자동차대인사고 보수기준'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준은 모호한 요율과 누진가산액 등 복잡하여 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하므로 간결하고 시장 경쟁의 환경에 부합되는 '독립손해사정사의 보수기준'으로 일원화하여야 한다.

22) 한국손해사정사회는 2009. 12. 10일 자율규정으로 보수기준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 기본보수는 손해사정금액의 10%를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기본보수의 범위 내에서 손해사정업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여비교통비 등을 산정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이 하는 손해사정업무 보수 또는 기본보수의 적용이 곤란한 손해사정업무 보수의 산정은 인건비 기준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한 금액과 제경비 등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총액의 20%를 합산한 금액으로 실제계산방식에 의한다. 이 경우 여비교통비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손해사정사 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선진 사회에서는 보험회사와 선임손해사정사 간, 또한 보험소비자 개인과 독립손해사정사 간의 손해사정 보수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여 규율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기준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선임손해사정사와 보험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면 보수기준을 만들어서라도 보호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보수기준은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 신고 제도가 폐지되었고, 독립손해사정사도 승인 제도는 존치하고 있으나 승인절차의 복잡성과 현실성이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손해사정사 단체가 시장환경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판단 하에 보수기준을 업무영역별로 결정하여 공시토록 해야 한다. 또한 손해사정사는 그 보수기준을 사무소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 보수로 인한 다툼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진정한 보험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거듭날 것이라 보인다.

V. 맺는말

이 세상에 만인을 만족시키는 기준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기준도 오히려 규제라는 족쇄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모두 편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힘이 있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 편하게 되고,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하게 된다. 이는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음으로 인해 주도권을 가진 강자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약자에게는 최소한 내세울 수 있는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해가면서 상호간에 협의 하에 업무 또는 보수 기준을 만든다. 이러한 기준은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되고, 어기게 되면 부도덕

성의 평가수단이 된다. 즉, 기준을 별척이 있든, 없든 도덕성의 잣대로 사용한다.

선임손해사정사나 독립손해사정사나 보수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선임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자긍심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과다보수라는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보수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손해사정 문화의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되므로 보험회사나 보험소비자에게도 건전하고 균형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양승규, 김성태, 장경환, 정호열, 손해사정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보험법연구1, 삼지원, 1995. 1.
- 장경환, 독일보험계약법상의 손해감정인, 보험학회지 제43호, 한국보험학회, 1994. 4.
- 남상욱, 선진국의 보험전문인 운영사례와 시사점, 월간 금융리포트, 2006. 12.
- 이 황,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입법취지와 향후 정책방향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1999. 5월호.
- 이정호·김명규, 손해사정사 보수기준의 적정화 방안, 한국손해사정학회, 2009년 추계학술대회 2009. 11.
- 국회사무처, 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법률 제3043호), 1977 12. 31, p.347, p.387.
-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사 변천사 2006. 6.
- 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Insurance Adjusters(<http://www.nalia.com>)
- National Association of Public Insurance Adjusters (<http://www.napia.com>)
- The Chartered Institute of Loss Adjusters(<http://www.cila.co.uk>)